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2.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 출입기록부 기록 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절차 개선, 방역위생관리업자 및 차량 운전자 등 보수교육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4.4.2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 운전자 등 보수교육 및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관련 개정사항은 '25.1.1일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협회·단체에서는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홍보·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 관련부서, 시도 방역부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농협 경제지주 축산방역부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건설팅방역부장, (사)전국한우협회장,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장,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장,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장, (사)한국오리협회장, (사)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주무관 이민희 서기관 박경일 방역정책과장 이동식 전결 2024. 4. 30.

협조자

시행 방역정책과-2394 (2024. 4. 30.)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0 팩스번호 044-868-0628 / [lmh5124@korea.kr](mailto:lmh5124@korea.kr) / 대한민국 공개